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9. 25 선고 2024가단135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8.

판 결 선 고 2024. 9. 25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은 4,460,52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460,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,460,5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9개월이 지나 D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으므로,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31163 판결,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.

갑 제2, 3,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원고가 2021. 5. 4. 이미 D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3,000,000원을 대출한 점, D가 피고에게 2022. 3. 15.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2023. 2. 6.경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,926,000원, 2023. 2. 15.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14,962,000원의 채무등이 연체된 점,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일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, 피고와 D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조현락

별지